 현행	개정	비고
제4조 (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)	제4조 (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)	
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	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·관리 및 사고 예방	
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	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	
책임을 진다.<개정:2017.09.06.,2020.09.21.>	책임을 진다.<개정:2017.09.06.,2020.09.21.>	
② 안전관리위원장(이하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다	② 안전관리위원장(이하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다	
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.	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.	
1.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	- 1.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	
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.	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.	
2.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,	- 2.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,	
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.	부 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.	
3.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	-3.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	
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	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	
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	시크를 기급하다 8년기: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	
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	건축·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	
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	선숙 선선선이임을 구선구시도 이고 선구들산선된 경관리자를 둔다.	
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	'중한다시'를 눈다.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	
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	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	
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	에 데이의 등장을 오피어기의 친구들한전한다음장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	
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	서울 시도에게 뒤에서 한구를 한천된경 도장에 된 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	
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	인 법률도 성이는 미에 떠나 인구들인신환성인다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	
수 없기다 에임 또는 되식의 중시에 나는 연구될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	시글 시장이어와 인디.(신글: 2020.02.24. 기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	
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	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	
에 떠나 네너지를 시청하여 식구를 내용하게 하여 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	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	
아 인터.(선결: 2020.02.24. 기	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	
	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	
제7조 (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	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 제7조 (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	
제/도 (한구골꼭감시 및 한구골한산산다람당시의 임무)	제7호 (현구골작업자 및 현구골현전현다담당자의 임무)	
(17) (17) (17) (17) (17) (17) (17) (17)	HT/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	
다.	① 한구글취임시는 역급 수 오의 급구글 구행한 다.	
1.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	<u> </u>	
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	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잔	
다.	표표 및 현카에클럴하다 현전에 현전 독급을 한 <mark>다. 사항</mark>	
다.2.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	역. 시청 2.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	
다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		
감독한다.	함성이 및 인구설등장시시에게 인간인데 이고 및 감독하다.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	
경국인다. 3.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	김국인다. 한구골씩감시는 예정 한구골의 한센된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	
3. 친구들자고 불명에 대한 사용을 친구구세명에게 보고한다.	지 합구를 요물적으로 구성이기 귀에서 친구들당 지정한 수	
에게 모고인다. 4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	중시시 중에서 한구철인산단다림당시를 시경철 구 있다.	
4. 기다 한구절 인신된다와 된단된 예정조시를 실시한다.	있다. 3.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	
설시인다. 5.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	3. 한구설시고 설명에 대한 사용을 한구구제공 총장에게 보고한다.	
그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	중8에게 모고인다. 4.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	
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	4. 기다 친구들 한잔단다의 천단단 예정소시를 실 시한다.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	
는 미에 따디 철저이어 공용에게 보고이어야 한다.<개정:2017.09.06.>	열시한다. 한구월등에 직접한 모모구들 미시아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	
6.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	연구활동동시시도이어금 이글 작용이게 이어야 한 다.	
0. 친구할색감시는 성실한산전한 설시 대형 한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, 시	더. 5.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	
수 보기 한천목모를 취해서 한구들의 취임기계, 시 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		
<u> </u>	T = 고고한 6 포 6세 고한 법률 시행하는도 경이	

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 장(양식)은 [별표 5]와 같다.<신설: 2020.02.24. > 7.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<개 정:2017.09.06., 2020.02.24.>	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:2017.09.06.> 6.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. 시설물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(양식)은 [별표 5]와 같다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 7.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<개정:2017.09.06., 2020.02.24.>	
제10조 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	제10조 (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)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어하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배정하여야 한다.<신설: 2020.02.24. >	
제11조 (교육·훈련 등)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사항들을 하여야한다.	제11조 (교육·훈련 등)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·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 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.	
제16조 (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)<신설: 2020.02.24. >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할 수 있다.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[별표 6]과 같다.		